■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Hydrogen peroxid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7722-84-1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 취급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눈이나 몸을 씻을 수 있는 세안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할 것 - 취급시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자급식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취급시 적절한 보호복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 화상을 유발 시킬 수 있음. - 20 ~ 30% 수용액은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유발 시킬 수 있음. - 미스트를 흡입하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 DNA구조파괴와 염색체이상을 일으킬 수 있음. DNA구조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은 염색체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양보다 적음. - 섭취 시 분해되어 산소의 과다 방출로 식도나 위가 팽창되어 내출혈(internal bleeding)을 일으킴. - 과산화수소로 구강 소독을 할 경우 혀 돌기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일명 “hairy tongue”). - 화상을 유발 시킬 수 있음. - 20 ~ 30% 수용액은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유발 시킬 수 있음.
	화학사고 예방	-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보호복, 고무장갑,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자급식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서늘한 장소에 보관할 것. - 피부와의 접촉 시 즉시 제조자에 의해 지정된 물질로 충분히 씻어 낼 것. - 적절한 보호복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사고 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 빈 용기에는 잔류물(증기, 액체 및 고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급시 예방절차를 지킬 것. - 저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할 것. - 밀폐된 장소는 진입 전에 반드시 환기 시킬 것.
	보관・저장	- 가벼운 플라스틱 병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35℃ 이하의 장소에 보관할 것. - 다 쓴 용기는 깨끗한 물로 철저히 씻어 놓을 것. - 원래의 용기에서 분리되어 사용된 과산화수소를 다시 원용기로 되돌려 놓지 말 것. 저장 용기는 열, 직사광선, 가연성 물질로부터 떨어져 보관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